

중고령자의 은퇴만족도에 대한 연구*

성지미** · 안주엽***

기대수명의 연장과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조기퇴직 관행으로 강요된 은퇴를 경험한 중고령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에 훨씬 앞서는 비자발적이고 예기치 못한 은퇴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준비하지 못한 은퇴자의 빈곤화 가능성을 높이고, 은퇴 후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킨다. 고령자 또는 은퇴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존재하지만 은퇴 자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현실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자료에 포함된 45세 이상 은퇴자 2,026명을 대상으로 프로비트형(probit model)의 추정과 추가변수의 적합성에 대한 우도비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하여 은퇴만족도의 결정요인을 찾는다. 실증분석 결과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소득 및 자산과 부채 등 금전자산뿐 아니라 건강자산 및 사회적 자산이 은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예상된 은퇴인 정년퇴직과 비교할 때, 자발적 은퇴는 은퇴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급작스런 비자발적 은퇴는 부정적 효과를 가진다. 은퇴 직전 일자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가설검정은 근속기간과 자발적 이직 여부 및 세부 이직사유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효과를 가짐을 보여준다. 은퇴자의 은퇴만족도, 더 나아가 고령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충분한 은퇴 후 소득을 준비하는 과정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준비된 정년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구축과 은퇴 후 건강과 사회적 유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은퇴만족도, 건강자산, 사회적 자산, 중고령자, 정년퇴직, 은퇴사유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J1, D1, C2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육연구진흥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부교수, 전화: (041) 560-1439, E-mail: jsung13@kut.ac.kr

*** 교신저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 (02) 3775-5555, E-mail: jyahn@kli.re.kr
논문투고일: 2011. 4. 29 수정일: 2011. 5. 18 게재확정일: 2011. 6. 22

I. 서 론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조기퇴직 관행은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현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중고령자를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2009년 300인 이상 사업장 2,469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단일정년제를 적용하는 1,779개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은 57.2세이며, 55세 정년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정년은 이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며, ‘오륙도’나 ‘사오정’ 등은 우리 노동시장에 만연한 비자발적 조기퇴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자발적 노동시장 퇴장이나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일반적이며, 은퇴자가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될 때까지 경제적 고통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하남(2005)은 55세 정년퇴직이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실질 은퇴연령은 68세로 나타나 정년퇴직연령, 실질퇴직연령, 희망퇴직연령 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남성 중 절반 이상이 강제퇴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자의 만족수준은 미국의 은퇴자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편(신현구, 2007)으로 나타난다. 또한 OECD(2009)는 한국의 55~64세 연령층의 고용률이 높은데, 이는 경력일자리로부터 공식적으로 강제퇴직한 후 은퇴기금체계의 미비로 약 10년 동안 근로를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인구가 증가하자 최근에 은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은퇴 관련 연구의 주요 주제로는 은퇴 준비과정, 은퇴 결정과정, 은퇴 후 소득흐름, 은퇴 후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에 은퇴만족도를 추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은퇴만족도와 관련된 기존연구에서 논의된 세 가지 유형의 자산, 즉 금전자산(pecuniary assets), 건강자산(health asset 또는 health capital), 그리고 사회적 자산(social network assets)이 인구학적 특성에 추가하여 은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 산발적으로 포함된 결정요인들을 통합하는 한편, 은퇴만족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결정요인들은 제외한다. 금전자산에는 가구소득, 본인의 소득원별 소득의 유무, 다양한 형태의 자산 또는 부채의 보유 여부, 거주주택의 소유

형태가 포함되며, 사회적 자산에는 다양한 단체참여에 추가하여 지척지인(가까이 사는 친척, 친구, 이웃사촌 등)의 존재 및 만남의 빈도 등이 포함된다. 둘째, 정년퇴직과 같은 예정된 그러나 불가피한 은퇴, 자발적 은퇴, 비자발적이지만 선택적 은퇴, 갑작스런 은퇴 등 다양한 은퇴사유가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추가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기존연구와는 달리 은퇴사유를 세분함으로써 은퇴사유가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한다. 셋째, 은퇴 직전 일자리의 다양한 특성이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추가효과를 분석한다. 은퇴 직전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에서 더 나아가 사업체 규모, 파트타임근로 여부, 근속기간, 근로시간, 임금수준, 이직사유가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추가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가설검정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은퇴자의 은퇴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절에서는 최근 행복경제학(happiness economics)의 논의와 은퇴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문헌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제Ⅲ절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은퇴자와 은퇴만족도를 정의하고, 인구학적 특성과 세 가지 유형의 자산—금전자산, 건강자산, 그리고 사회적 자산—과 은퇴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제Ⅳ절에서는 먼저 실증분석모형과 추가변수의 적합성을 가설검정하는 우도비검정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인구학적 특성과 세 가지 유형의 자산을 고려한 은퇴만족도의 기본모형과 은퇴사유를 추가한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은퇴 직전 일자리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가설검정을 통하여 이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효과를 갖는 은퇴만족도 결정요인을 찾는다. 그리고 마지막 제Ⅴ절에서는 연구결과 및 이의 정책적 함의를 요약한다.

Ⅱ. 은퇴만족도에 관한 기존연구

1. 행복경제학의 등장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은퇴 후 삶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은퇴 결정요인, 은퇴 후 적정 소비수준과 이에 필요한 소득 및 자산 수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선택 및 이러한 선택이 수반하는 결과의 시뮬레이션 등 객관적 변수를 중심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한 논

의에 초점을 맞춘 반면, 사회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은퇴 후 삶에 대한 적응과 만족도 등 주관적 변수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도 객관적 척도로 간주되어 온 소득 또는 자산이 삶의 전반적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제시된 1990년대 후반부터, 주관적 변수인 ‘행복’과 객관적 변수의 관계가 주목을 끌면서 ‘행복경제학(happiness economics)’이 등장하였다(Blanchflower and Oswald, 2004; Frey and Stutzer, 2002).

행복경제학에서는 주관적 변수인 행복 또는 삶의 질을 효용(utility)의 실증적 척도로 사용하는데, 이들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고 추정식도 거의 유사하다(Di Tella *et al.*, 2001; Blanchflower and Oswald, 2004). 경제학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는 거시경제변수인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과 행복수준과의 관계를 국가별(주로 유럽 국가들 또는 영국 및 미국)로 비교하거나 1인당 GDP와 행복(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종단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Di Tella *et al.*, 2001, 2003; Welsch, 2007). 특히, 횡단면 자료의 분석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생애주기에 따라서는 소득증가가 반드시 행복수준을 상승시키지는 않는 현상에 관심이 주어졌으며(예를 들면, Easterlin, 2001),¹⁾ 한편에서는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논의되어 온 주관적 행복의 측정방법 및 주관적 변수의 사용에 대한 타당성 등이 검토되었다(Ferrer-i-Carbonell and Frijters, 2004; Krueger and Schkade, 2008; Benjamin, 2010).

주관적 행복에 대한 연구의 포괄적 검토를 통해 행복의 결정요인을 모색하는 Dolan *et al.*(2008)은 건강상태, 이혼 또는 별거, 실업, 사회적 관계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2. 은퇴 후 삶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행복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고령인구 및 은퇴에 대한 연구 역시 은퇴 후 안정적 소득원 확보라는 전형적 틀을 벗어나 은퇴 후 삶에 대한 만족도로 확대되었다. 독일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는 Pinguart and Schindler(2007)는 사회경제적 자원(건강 및 배우자를 포함)이 풍부하면 은퇴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의 변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밝

1) Frey and Stutzer(2002)는 경제학 또는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행복 또는 주관적 복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 논의를, Clark *et al.*(2008)은 행복, 효용, 그리고 소득 간 관계의 종합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하고 있으며, Charles(2002)는 은퇴가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저락시키지만, 내생성을 통제하면 오히려 은퇴가 삶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럽과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와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한 Di Tella *et al.*(2003)과 Welsch(2007)는 취업자 대비 실업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지만, 임금근로자 대비 은퇴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높다고 밝히고 있다.

3. 은퇴만족도

은퇴만족도는 은퇴 전 준비과정과 은퇴 후 적응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은퇴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은 은퇴 후 삶에 대한 경제적 준비 여부 및 정도, 은퇴 후 활동이나 소일거리, 은퇴에 대한 인식 및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등 변수를 포함한다(사회학·노년학·심리학 분야에서는 Schmitt *et al.*(1979), Szinovacz and Davey(2005), Smith and Moen(2004), Fouquereau *et al.*(2005), Von Solinge and Henkens(2008) 등이고, 경제학 분야에서는 Shultz *et al.*(1998), Panis(2004), Elder and Rudolph(1999), Bender(2004) 등이다).

은퇴 후 삶(소득 또는 소비, post-retirement income stream)을 설명하는 대표적 경제학 이론으로 Ando and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모형(life cycle model)을 들 수 있으며, Quinn(1977), Hurd(1990), Andrew(1993), Gustman and Steinmeier(2005)는 이러한 맥락에서 은퇴 후 적정 소비수준 유지에 필요한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연금 및 금융상품의 선택과 투자방법, 그리고 은퇴시점의 추정 소득 수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노년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은퇴만족도를 설명하고자 역할론(role theory), 지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 생애과정 접근방식(life course approach) 등 다양한 이론이 원용되고 있으며, 예측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tion)와 은퇴만족, 은퇴적응과정의 개인적·환경적 요인의 탐색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예측사회화를 위해 은퇴준비 교육이나 상담, 은퇴자금 관련 컨설팅, 은퇴적응도를 측정하는 점진적 은퇴(gradual retirement) 등이 이용된다(Dorfman, 1989).

은퇴만족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소득 또는 자산에 추가하여 은퇴 적응과정 및 사회망(social network)의 역할을 밝혀 왔으며, 2000년 이후에는 건강상태와 은퇴사유가 추가되고, 최근에는 연금가입과 이의 유형 및 은퇴의 자발성 여부가 추가되고 있다. 특히, 은퇴의 자발성 여부는 은퇴 예상시점까지 은퇴

후 소득의 준비와 심리적 적응 등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연구자가 수집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예를 들면, 355명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Schmitt(1979))도 있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Fouquereau *et al.*(2005)는 유럽 6개국 1,686명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국제 간 비교연구이며, von Solings and Henkes(2008)는 네덜란드 학제간연구연구원(Netherlands Interdisciplinary Demographic Institute)에서 수집한 패널자료 중 778명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Smith and Moen(2004)은 『코넬 은퇴 및 복지연구』(*Cornell Retirement and Well-Being Study*)를 이용하여 241쌍의 은퇴자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Shultz *et al.*(1998)과 Panis(2004), Elder and Rudolph(1999), Bender(2004)는 미국의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를 사용하여 은퇴만족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4. 은퇴만족도의 결정요인

은퇴만족도의 실증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변수는 인구학적 특성, 건강 상태 및 경제상태 관련 변수 등이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은퇴만족도가 높고(Panis, 2004; Bender, 2004; Smith and Moen, 2004), 은퇴만족도와 연령 사이에는 양(+)(Panis, 2004)의 또는 U자형(Bender, 2004)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²⁾ 이러한 관계는 연령이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한국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연금수급 조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강상태는 객관적 지표(예를 들면, ADLs)나 주관적 지표로 측정되는데,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만족도가 높아진다(Dorfman, 1989; Noone *et al.* 2009; Elder and Rudolph, 1999; von Solings and Henkens, 2008; Smith and Moen, 2004).

경제상태의 효과를 보면, 전형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산이 많을수록 은퇴만족도가 높아지는 상당히 일관성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연구는 이들 변수를 각각 소득원별 소득(Bender, 2004; Panis, 2004), 순자산이나 부채 등(Elder and Rudolph, 1999)으로 세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2) 연령과 일자리만족도 사이에 존재하는 U자형 상관관계와 유사하다(Clark and Oswald, 1996).

연금의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부재설(Noone *et al.*, 2009)과 긍정적 효과(Panis, 2004; Bender, 2004)의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사용하는 변수의 차이(소득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금액) 때문이다.

최근 경제학 분야에서 은퇴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은 은퇴의 자발성—자발적 은퇴(voluntary retirement)와 강제은퇴 또는 비자발적 은퇴(forced or involuntary retirement)—에 따른 차이에 관심을 두고 있다. Shultz *et al.*(1998)은 HRS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사유를 밀어내기(push) 요인(강제적 은퇴)과 당기기(pull) 요인(자발적 은퇴)으로 구분한 후, 밀어내기 요인은 본인 및 가족원의 건강, 회사의 해고 등을, 당기기 요인은 여가시간 즐기기, 스트레스에서 해방 등을 포함하는데, 비자발적 은퇴자에게는 밀어내기 요인이, 자발적 은퇴자에게는 당기기 요인이 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은퇴준비는 은퇴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데(Elder and Rudolph, 1999),³⁾ 은퇴의 자발성은 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 및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비자발적 또는 강제은퇴는 은퇴시점(timing of retirement)까지의 충분한 경제적·심리적 준비과정을 저해하여 은퇴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⁴⁾

5. 은퇴만족도 관련 국내연구

고령자 또는 은퇴자의 삶의 질에 대한 국내연구는 상당수 존재하지만 은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을 이용한 신현구(2007), 백은영(2009), 손종철(2010) 정도이다. 이들은 은퇴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 소득 관련 변수와 건강상태를 포함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신현구(2007)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면서, 이의 결정요인으로 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주관적 건강인식’, ‘사회적 활동 정도’, ‘은퇴 후 경과기간’, ‘은퇴에 대한 만족’을 포함시켰으며, 은퇴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⁵⁾ 그러나 이 연구는 모형의 단순성을

3) 이들은 HRS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자산, 결혼상태 및 건강을 통제하였을 때, 은퇴준비(은퇴에 대한 인식 및 준비모임 참석)는 은퇴만족도를 높이지만 비자발적 은퇴는 은퇴만족도를 낮춘다고 분석하고 있다.

4) 비자발적 은퇴의 사유로는 주로 정년퇴직,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포함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해고, 가구 상황(소득이나 배우자, 가족원의 건강상태), 개인의 건강상태 등이 포함되고 있다. Von Solinge and Henkens(2007)는 불량한 건강상태, 정리해고, 경기 악화로 인한 해고로 인한 은퇴는 비자발적 은퇴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비자발적 은퇴는 은퇴만족도를 낮춘다고 분석하고 있다.

추구하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는 기존연구가 제시한 주요 결정요인을 누락하였으며, 상이한 차원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나의 척도(‘사회적 활동 정도’)로 단순화하는 한편, 은퇴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노인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을 원용하여 은퇴 전후 만족도와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순위로지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백은영(2009)은 다양한 단체모임 참여, 경제상태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경제적 이유 또는 기타 이유로 일할 의사 등을 결정요인으로 추가하고 있다.⁶⁾ 이 연구는 삶의 만족도에는 주요한 결정요인이지만 은퇴만족도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설명변수(예를 들면, 자녀의 수, 자녀관계 만족도)를 포함하였고, 경제상태 만족도나 경제적 이유로 또는 기타 이유로 일할 의사 등 은퇴만족도와 내생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은퇴 결정요인과 은퇴만족도의 로짓모형을 독립적으로 추정하는 손종철(2010)은 은퇴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 은퇴사유,⁷⁾ 은퇴 당시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 은퇴 당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및 단체모임(종교모임 및 친목모임)과 경제상태 만족도를 추가하고 있다.⁸⁾ 주된 결과를 보면 자발적 은퇴와 비교할 때 비자발적 은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은퇴만족도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은퇴 당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상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은퇴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설명변수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한편, 경제상태 만족도 역시 내생변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기혼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포함되었다.

6)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 교육수준, 네 범주의 연령계층(60세 미만 기준), 배우자 유무, 자녀수를, 소득 관련 변수로는 주택소유 여부, 가구총소득, 순자산, 그리고 부채, 사적이전소득, 연금소득, 자산소득의 유무가 포함되었다. 소득 관련 변수 중 가구소득, 부채 존재, 사적이전소득 존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은퇴사유는 ‘더 많은 여가시간 확보 등 자발적인 경우’(기준집단), ‘본인 및 배우자 등의 건강문제’, ‘정년퇴직 및 다른 일자리 구하기 어려움’의 세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8)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 교육연수, 나이, 거주지(수도권, 읍면동), 자녀수, 대학 이하 재학 자녀 유무를, 소득 관련 변수로는 국민연금소득, 공무원연금소득, 사회보장소득, 개인연금소득, 이전소득, 부동산자산(2억 원 이상) 보유, 금융자산(5,000만 원 이상) 보유가 포함되었으나 은퇴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인 거주주택의 소유형태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득 관련 변수 중에는 공무원 연금소득액과 부동산자산만이 유의수준 0.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Ⅲ. 은퇴만족도의 기초분석

1. 자료 및 표본

(1)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은 ‘향후 고령 사회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활용될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고령자 10,254명(6,171가구)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은 ① 인구, ② 가족관계, ③ 건강, ④ 고용, ⑤ 소득, ⑥ 자산, ⑦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2) 은퇴자와 은퇴만족도

『고령화연구패널』은 고용영역에서 조사시점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자’(5,984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D010. ____님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에 대해 ‘과거에 일하였으나, 지금은 은퇴하였다’고 응답한 자를 ‘은퇴자’(2,027명)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① 은퇴시기(연과 월) 및 은퇴사유(제1순위와 제2순위), ② 은퇴 당시 배우자 유무 및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 ③ 현재 소득 있는 소일거리 유무와 소일거리 특성(근로장소, 주당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④ 소득을 위한 일을 원하는지 여부 및 사유와 일의 형태, ⑤ 은퇴만족도 및 은퇴 전후를 비교한 선호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¹⁰⁾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은퇴만족도를 파악하는 설문과 답항은

‘D621. ____님께서 은퇴한 것에 대하여 현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9) 2008년 제2차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격년 기본조사의 중간인 2007년에는 부가조사의 형태로 직업력을 조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li.re.kr/klosa/ko/main/main.jsp>를 참조. 본 논문에서는 해당 변수에 대해서만 설명하였다.

10) 45세 이상 중고령자 전체 개인표본 10,254명 중 제1차 조사 당시 3,828명은 취업자(18시간 미만 무급종사자 40명 제외), 422명은 구직자, 5,984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3,805명은 ‘뚜렷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 152명은 ‘과거에도 일하였고, 앞으로도 일할 의사가 있으며, 당장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다’로 파악되었으며, 나머지 2,027명은 본 연구의 관심대상으로 ‘과거에 일하였고, 지금은 은퇴하였다’고 응답한 은퇴자 표본이다.

‘[1] 매우 만족한다.

[3] 만족하는 편이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으로 은퇴만족도를 3점 척도로 파악하고 있다.¹¹⁾

(3) 은퇴자 표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체 은퇴자 중 은퇴사유를 밝히지 않은 1명을 제외한 2,026명의 은퇴자 표본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은퇴자 표본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여성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며,¹²⁾ 연령대별로는 65~69세 21%, 70~74세 19%, 75세 이상이 23%로 65세 이상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 미만이 6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은 21%, 전문대졸 포함 대졸 이상은 14%에 불과하다.

2. 인구학적 특성과 은퇴만족도

<표 1>에서 인구학적 특성별 은퇴만족도를 보면, 은퇴자 표본 중 56.5%가 현재 은퇴에 만족(4.3%는 매우 만족, 52.2%는 만족하는 편)하고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은퇴에 만족하는 비중이 더 높다. 현재 은퇴에 만족하는 비중을 연령대별로 보면, 45~54세 연령대의 61%에서 60~64세 연령대의 52%까지 낮아지다가 그 이후 다시 높아져 75세 이상에서는 63%에 이른다. 이를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 미만의 49%만이 은퇴에 만족하는 반면, 대졸 이상은 77%가 은퇴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은퇴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1) 통상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KLoSA』는 은퇴만족도를 3점 척도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은퇴 전후의 비교(‘D622. 은퇴 후를 은퇴하기 전과 비교할 때, 은퇴 후가 더 좋습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더 좋지 않습니까?’) 역시 3점 척도(‘[1] 은퇴 후가 은퇴 전보다 더 좋음, [2] 은퇴 후와 은퇴 전이 비슷함, [3] 은퇴 후가 은퇴 전보다 좋지 않음’)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삶에 대한 만족도 항목들은 0~100까지의 연속변수로 파악하고 있다.

12) 은퇴자는 정의상 과거의 근로경험을 전제로 하는데, 여성 중 상당수는 근로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표 1〉 인구학적 특성별 은퇴만족도

(단위: 명, %)

	표 본		만 족						불 만 족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전체	2,026	[100.0]	1,144	(56.5)	87	(4.3)	1,057	(52.2)	882	(43.5)
성별										
남성	1,160	[57.3]	667	(57.5)	50	(4.3)	617	(53.2)	493	(42.5)
여성	866	[42.7]	477	(55.1)	37	(4.3)	440	(50.8)	389	(44.9)
연령대										
45~54세	222	[11.0]	136	(61.3)	14	(6.3)	122	(55.0)	86	(38.7)
55~59세	221	[10.9]	115	(52.0)	9	(4.1)	106	(48.0)	106	(48.0)
60~64세	295	[14.6]	153	(51.9)	10	(3.4)	143	(48.5)	142	(48.1)
65~69세	429	[21.2]	228	(53.1)	17	(4.0)	211	(49.2)	201	(46.9)
70~74세	394	[19.4]	218	(55.3)	13	(3.3)	205	(52.0)	176	(44.7)
75세~	465	[23.0]	294	(63.2)	24	(5.2)	270	(58.1)	171	(36.8)
교육수준										
고졸 미만	1,315	[64.9]	645	(49.0)	34	(2.6)	611	(46.5)	670	(51.0)
고졸	424	[20.9]	283	(66.7)	27	(6.4)	256	(60.4)	141	(33.3)
대졸 미만	60	[3.0]	41	(68.3)	4	(6.7)	37	(61.7)	19	(31.7)
대졸 이상	227	[11.2]	175	(77.1)	22	(9.7)	153	(67.4)	52	(22.9)

주: [] 안은 전체 표본 중 차지하는 비중이며, () 안은 각 인구학적 집단별 은퇴만족도의 비중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6).

3. 세 유형의 자산과 은퇴만족도

기존연구들에서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세 유형의 자산—소득, 거주형태, 자산 및 부채 등 금전자산, 건강자산, 사회적 자산—과 은퇴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자.

(1) 금전자산과 은퇴만족도

〈표 2〉는 금전자산과 은퇴만족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은퇴자 표본 중 국민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포함) 수급비중

〈표 2〉 금전자산과 은퇴만족도

(단위: 명, %, 만 원/년)

	표 본 ¹⁾		만 족				불 만 족			
	명	(%)	명	(%)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명	(%)		
전체	2,026	[100.0]	1,144	(56.5)	87	(4.3)	1,057	(52.2)	882	(43.5)
본인 소득 있음										
임금소득	103	[5.1]	54	(52.4)	6	(5.8)	48	(46.6)	49	(47.6)
자영업소득	20	[1.0]	13	(65.0)	0	(0.0)	13	(65.0)	7	(35.0)
농어업소득	34	[1.7]	25	(73.5)	1	(2.9)	24	(70.6)	9	(26.5)
부업소득	24	[1.2]	13	(54.2)	1	(4.2)	12	(50.0)	11	(45.8)
국민연금소득	397	[19.6]	263	(66.2)	20	(5.0)	243	(61.2)	134	(33.8)
개인연금소득	33	[1.6]	25	(75.8)	1	(3.0)	24	(72.7)	8	(24.2)
사회보장소득	617	[30.5]	305	(49.4)	26	(4.2)	279	(45.2)	312	(50.6)
기타 소득	31	[1.5]	23	(74.2)	2	(6.5)	21	(67.7)	8	(25.8)
거주주택 소유										
자가	1,495	[73.8]	941	(62.9)	72	(4.8)	869	(58.1)	554	(37.1)
전세	250	[12.3]	109	(43.6)	7	(2.8)	102	(40.8)	141	(56.4)
월세	177	[8.7]	46	(26.0)	2	(1.1)	44	(24.9)	131	(74.0)
기타	104	[5.1]	48	(46.2)	6	(5.8)	42	(40.4)	56	(53.8)
자산 및 부채 보유										
부동산	232	[11.5]	170	(73.3)	17	(7.3)	153	(65.9)	62	(26.7)
금융자산	819	[40.4]	584	(71.3)	47	(5.7)	537	(65.6)	235	(28.7)
보험	87	[4.3]	64	(73.6)	15	(17.2)	49	(56.3)	23	(26.4)
사채(빌려준 돈)	26	[1.3]	14	(53.8)	2	(7.7)	12	(46.2)	12	(46.2)
기타 자산	2	[0.1]	1	(50.0)	0	(0.0)	1	(50.0)	1	(50.0)
부채	212	[10.5]	96	(45.3)	5	(2.4)	91	(42.9)	116	(54.7)
	표본	평균 <sd>	표본	평균 <sd>	표본	평균 <sd>	표본	평균 <sd>	표본	평균 <sd>
가구소득 (만 원/년) ²⁾	1,822	1,405 <2,653>	1,029	1,718 <2,930>	75	2,694 <3,951>	954	1,642 <2,823>	793	998 <2,178>
가구소득 무응답	204		115		12		103		89	

주: 1) 전체 표본 중 해당 소득원별 본인 소득이 있거나 해당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한 표본의 수이며, [] 안의 숫자는 이들이 전체 표본 중 차지하는 비중임. () 안의 숫자는 은퇴만족도별로 각 소득원이나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한 표본이 차지하는 비중임.
 2) 가구소득의 평균 및 표준편차(sd)는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표본으로부터 계산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6).

은 20%에 이르는 반면, 개인연금 수급비중은 1.6%에 불과하다. 또한 31%가 사회보장급여(실업급여, 산재급여 및 보상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보훈연금 급여, 사회복지수당급여 등)를 수급하여 복지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은퇴자 표본의 거주주택의 소유형태를 보면, 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4명 중 3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12%와 8.7%는 각각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자산 및 부채를 보면, 12%가 부동산(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사업체, 농장 등)을, 40%가 금융자산(50만 원 이상 현금 및 은행예금, 저축성예금, 주식/투신/뮤추얼펀드, 채권)을, 4.3%가 보험자산(정기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을, 11%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¹³⁾

가구소득에 무응답한 204명을 제외한 은퇴자 표본의 평균가구소득은 연간 1,405만 원이며, 이 중 243명은 가구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현재 은퇴에 만족하는 표본의 가구소득은 연간 1,718만 원(매우 만족에서는 2,694만 원)에 이르는 반면 은퇴에 불만족하는 표본의 가구소득은 998만 원에 불과하여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은퇴만족도가 높다.

본인의 소득원별 소득의 유무¹⁴⁾와 은퇴만족도의 관계를 보면,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자영업, 농어업으로부터의 소득이 있을 때 은퇴에 만족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사회보장소득, 부업소득, 임금소득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낮아진다.¹⁵⁾

거주주택의 소유형태와 은퇴만족도의 관계를 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은퇴자 중 63%가 은퇴에 만족하는 반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은퇴자 중 각각 44%와 26%만이 은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주택의 소유형태가 은퇴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자산과 은퇴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부동산, 금융자산, 저축성 보험 보유자가 은퇴에 만족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부채 보유자가 은퇴에 만족하는 비중은 낮으며, 사채(빌려준 돈)의 존재 역시 은퇴만족도를 다소 낮춘다.

13)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98.8%의 가구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차이는 『2010년 가계금융조사』의 금융자산 보유주체가 가구(가구원 중 한 사람 이상이 해당 자산을 보유)인 반면 『고령화연구패널』에서는 개인이라는 데서 발생한다. 또한 후자는 각 금융자산을 ‘50만 원’ 이상 보유할 때 해당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차이를 지적해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14) 소득원별 본인 소득이 있는 표본이 매우 적어 이들 각각의 금액보다는 소득원별 소득의 유무만 고려한다.

15) 후자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지는 소득의 유형으로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건강자산과 은퇴만족도

은퇴자 표본의 주관적 건강상태¹⁶⁾를 보면, <표 3>에서 보듯이 2.5% 만이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24%는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31%와 15%가 ‘나쁜 편’ 또는 ‘매우 나쁨’으로 응답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 은퇴자 중 은퇴에 만족하는 비중은 83%에 이르는 반면, 건강상태가 ‘나쁜 편’인 은퇴자 중에서는 44%, 건강상태가 ‘매우 나쁨’ 은퇴자 중에서는 25%만이 은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은퇴 후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적 자산과 은퇴만족도

<표 4>는 사회적 자산과 은퇴만족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¹⁷⁾ 표에서 보듯이 은퇴자 세 명 중 한 명은 거의 매일(‘1주일에 4회 이상’), 또 다른 세 명 중 한 명은 일주일에 1~3회 정도 지척지인(‘가까이 사는 친구, 친척 또는 이웃사촌’)과 만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3%는 지척지인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척지인이 없는 은퇴자의 36%만이 은퇴에 만족하는 반면, 지척지인이 있는

<표 3> 주관적 건강상태와 은퇴만족도

(단위: 명, %)

	표 본		만 족						불 만 족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전체	2,026	[100.0]	1,144	(56.5)	87	(4.3)	1,057	(52.2)	882	(43.5)
매우 좋음	47	[2.3]	39	(83.0)	6	(12.8)	33	(70.2)	8	(17.0)
좋은 편	479	[23.6]	369	(77.0)	37	(7.7)	332	(69.3)	110	(23.0)
보통	576	[28.4]	384	(66.7)	26	(4.5)	358	(62.2)	192	(33.3)
나쁜 편	627	[30.9]	278	(44.3)	9	(1.4)	269	(42.9)	349	(55.7)
매우 나쁨	297	[14.7]	74	(24.9)	9	(3.0)	65	(21.9)	223	(75.1)

주 및 자료: <표 1> 참조.

16)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건강자산의 대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하는데, 설문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1] 매우 좋음, [2] 좋은 편, [3] 보통, [4] 나쁜 편, [5] 매우 나쁨’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17) 『고령화연구패널』은 인구학적 배경영역에서 종교, 사회적 관계 및 활동에 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가까이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친척 또는 이웃사촌이 있으시다면 이 분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와 다음 ‘단체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한다.

〈표 4〉 사회적 자산과 은퇴만족도

(단위: 명, %)

	표 본		만 족						불 만 족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전체	2,026	[100.0]	1,144	(56.5)	87	(4.3)	1,057	(52.2)	882	(43.5)
지척지인										
거의 매일	667	[32.9]	393	(58.9)	22	(3.3)	371	(55.6)	274	(41.1)
일주일 1~3회	652	[32.2]	415	(63.7)	33	(5.1)	382	(58.6)	237	(36.3)
한달 1~2회	315	[15.5]	181	(57.5)	17	(5.4)	164	(52.1)	134	(42.5)
일년 1~6	100	[4.9]	52	(52.0)	7	(7.0)	45	(45.0)	48	(48.0)
거의 볼 수 없음	28	[1.4]	8	(28.6)	0	(0.0)	8	(28.6)	20	(71.4)
지척지인 없음	264	[13.0]	95	(36.0)	8	(3.0)	87	(33.0)	169	(64.0)
단체 참여										
참여단체 없음	621	[30.7]	264	(42.5)	12	(1.9)	252	(40.6)	357	(57.5)
종교모임	519	[25.6]	313	(60.3)	36	(6.9)	277	(53.4)	206	(39.7)
친목모임	1,013	[50.0]	659	(65.1)	49	(4.8)	610	(60.2)	354	(34.9)
여가단체	133	[6.6]	102	(76.7)	13	(9.8)	89	(66.9)	31	(23.3)
동창회 등	379	[18.7]	284	(74.9)	29	(7.7)	255	(67.3)	95	(25.1)
자원봉사	55	[2.7]	41	(74.5)	5	(9.1)	36	(65.5)	14	(25.5)
정당 등	12	[0.6]	9	(75.0)	0	(0.0)	9	(75.0)	3	(25.0)

주 및 자료: 〈표 1〉 참조.

은퇴자의 52~64%가 은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지척지인과 만남의 빈도가 잦을수록 은퇴만족도가 높다.¹⁸⁾

단체 참여 여부를 보면 은퇴자 약 세 명 중 한 명은 참여단체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종교모임에는 네 명 중 한 명이, 친목모임(계모임, 노인정 등)에는 두 명 중 한 명이, 동창회 등(향우회, 종친회)에는 약 5명 중 한 명이 참여하고 있다. 여가(문화, 스포츠 관련)단체, 자원봉사나 정당 등(시민단체, 이익단체)에 참여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표에서 보듯이 어떤 단체에도 참여하지 않는 은퇴자 중 43%만이 은퇴에 만족하는 반면 각종 단체에 참여하는 은퇴자 중 60~77%가 은퇴에 만족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여가단체, 동창회 등 자

18) '거의 볼 수 없음'의 표본은 8명에 불과하여 비교가 불가능하며, '거의 매일'보다는 '일주일 1~3일'에서 은퇴에 만족하는 비중이 높다.

원봉사에 참여하는 은퇴자의 은퇴만족도가 매우 높다.

IV. 은퇴만족도 결정요인

1. 실증모형

은퇴만족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모형은

$$S^* = X\beta + \epsilon, \tag{1}$$

여기서, S^* : 은퇴만족도(종속변수)

X :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구성된 설명변수의 벡터¹⁹⁾

β : 이에 상응하여 추정되어질 계수의 벡터

ϵ : 오차항(error term)

이다. 종속변수 S^* 가 관찰되지 않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므로, 관찰가능한 이진변수

$S=1$ (은퇴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편)

$S=0$ (은퇴에 불만족)

를 사용하며, 오차항 ϵ 이 정규분포($\epsilon \sim N(0, \sigma^2)$)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실증분석모형은 프로빗모형(probit model)이 된다.²⁰⁾

모형 (1)에 일련의 설명변수를 추가하면, 모형은

$$S^* = X\beta + Z\alpha + \epsilon, \tag{2}$$

여기서, Z :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추가요인들로 구성된 설명변수의 벡터

19) 본 연구에서는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가능한 포함시키고자 노력한다. 다만 은퇴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로부터 얻을 수 없는 요인들은 제외되었다. 대부분 실증분석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주요 변수의 제외에 따르는 오류와 내생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밝힌다.

20) 『고령화연구패널』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은퇴만족도를 3점 척도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은퇴에 ‘매우 만족’하는 은퇴자의 비중은 4.3%로 매우 낮게 나타나 52.2%에 해당하는 ‘만족하는 편’과 함께 ‘만족’의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만족도를 ‘만족’과 ‘불만족’(‘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두 개의 범주로 다룬다. 원래의 세 가지 범주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할 수 있으나, ‘매우 만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점을 고려할 때, 실증분석 결과에서 중대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해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α : 이에 상응하여 추정되어질 계수의 벡터

로 수정된다.

추가 설명변수의 적정성에 대한 가설검정을 위한 우도비검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한다. 첫째,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H_0: \alpha=0 \quad \text{vs.} \quad H_A: \alpha \neq 0,$$

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귀무가설 하에서는 제약이 주어진(restricted) 모형 (1)이 참(true)이며, 대립가설 하에서는 제약이 없는(unrestricted) 모형 (2)가 참이다. 둘째,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하에서 얻어진 최우도(maximum log-likelihood)를 각각 L_R 과 L_U 라 하면, 우도비검정 통계량(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s)은

$$LR = -2(L_R - L_U) \sim \chi^2(r),$$

r = 자유도 = 제약식의 수 = 추가된 설명변수의 갯수

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LR_0 > \chi^2_\alpha(r_0)$ 이면 모형 (2)를, 그렇지 않으면 모형 (1)을 수용한다.

2. 은퇴만족도 결정요인

(1) 은퇴만족도 결정요인: 인구학적 특성

<표 5>는 인구학적 특성만을 고려한 은퇴만족도 결정요인의 추정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성(기준집단: 남성), 연령, 초대졸을 제외한 모든 교육수준(기준집단: 고졸) 모두 은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한계효과)이 8.5% 높으며,²¹⁾ 조사 당시 연령이 58.4세(2차식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1.3170/(2 \times 0.1128)] \times 10$)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은퇴에 보다 부정적이지만 그 이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이다.²²⁾ 고졸 은퇴자와 비교하여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은 초

21)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은퇴에 만족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기초분석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면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이러한 현상은 은퇴사유와 은퇴 적응과정 및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0세라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60세 이전, 특히 58세 이전까지 은퇴자는 은퇴(특히, 비자발적 또는 준비되지 않은 은퇴) 자체를 불만족스럽게 느끼지만, 그 이후에는 은퇴에 적응하여 가는 한편 국민연금 수급도 개시되어 일정 액의 연금 소득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여가'를 즐기게 되어 은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표 5〉 은퇴만족도 결정요인: 인구학적 특성

	추정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상수	4.0829	(1.1541)***		
여성	0.2179	(.0676)***	0.0852	(.0263)***
연령/10	-1.3170	(.3478)***	-0.5173	(.1366)***
(연령/10) ²	0.1128	(.0260)***	0.0443	(.0102)***
초졸 미만	-0.8361	(.1050)***	-0.3228	(.0373)***
중졸 미만	-0.5397	(.0845)***	-0.2121	(.0326)***
고졸 미만	-0.3714	(.0970)***	-0.1472	(.0382)***
초대졸	-0.0266	(.1828)	-0.0105	(.0721)
대졸 이상	0.3152	(.1126)***	0.1198	(.0409)***
-(로그 우도)	-1,311.80			
모형적합도 검증	151.06***			
Pseudo R ²	0.0544			

주: 1) 표본수는 2,026.
 2)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3)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4) 모형적합도 검증은 상수를 제외한 모든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우도비 가설검정 통계량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6).

졸 미만, 중졸 미만, 고졸 미만 은퇴자에서 각각 32.3%, 21.2%, 14.7% 낮은 반면 대졸 이상에서는 12.0%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은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2) 은퇴만족도: 유형별 자산의 효과

〈표 6〉은 인구학적 특성에 추가하여 세 유형의 자산, 즉 금전자산, 건강자산, 사회적 자산 각각이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추가효과의 유의성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도비검정 결과는 세 유형의 자산이 모두 은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효과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에 소득요인을 추가한 추정식 (1)을 보면, 가구소득과 본인의 소득원별 소득 중 농어업소득, 국민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은 은퇴만족도

보인다. 향후 은퇴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적해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표 6〉 은퇴만족도: 소득, 금전자산, 건강자산, 사회적 자산

	추정식 (1) 소득		추정식 (2) 자산		추정식 (3) 건강자산		추정식 (4) 사회적 자산	
상수	3.6279	(1.224)***	3.9534	(1.2189)***	3.6151	(1.215)***	4.2500	(1.1936)***
여성	0.2765	(.0693)***	0.2566	(.0703)***	0.2678	(.0707)***	0.1885	(.0721)***
연령/10	-1.3658	(.3662)***	-1.3435	(.3653)***	-1.1954	(.3654)***	-1.6049	(.3606)***
(연령/10) ²	0.1231	(.0273)***	0.1168	(.0272)***	0.1078	(.0273)***	0.1372	(.0270)***
교육수준(기준: 고졸)								
초졸 미만	-0.7961	(.1070)***	-0.7128	(.1094)***	-0.5379	(.1103)***	-0.6789	(.1099)***
중졸 미만	-0.4986	(.0861)***	-0.4714	(.0878)***	-0.3791	(.0886)***	-0.4513	(.0884)***
고졸 미만	-0.3330	(.0988)***	-0.2979	(.1007)***	-0.2718	(.1016)***	-0.2682	(.1005)***
초대졸	0.0586	(.1853)	-0.0150	(.1902)	-0.0341	(.1875)	-0.1157	(.1873)
대졸 이상	0.2565	(.1145)**	0.2226	(.1169)*	0.2661	(.1170)**	0.2634	(.1160)**
가구소득(로그)	0.0591	(.0140)***						
가구소득 무응답	0.3134	(.1167)***						
본인 소득원(기준: 해당 소득원 없음)								
임금소득	-0.0825	(.1337)						
자영업소득	0.0234	(.2978)						
농어업소득	0.5933	(.2469)**						
부업소득	-0.0178	(.2655)						
국민연금소득	0.2895	(.0785)***						
개인연금소득	0.5291	(.2570)**						
사회보장소득	-0.3261	(.0689)***						
기타 소득	0.2279	(.2514)						
거주주택(기준: 자가)								
전세			-0.4141	(.0900)***				
월세			-0.7641	(.1133)***				
기타			-0.3189	(.1341)**				

〈표 6〉 계 속

	추정식 (1) 소득	추정식 (2) 자산	추정식 (3) 건강자산	추정식 (4) 사회적 자산
자산 보유(기준: 없음)				
부동산		0.3129 (.1003)***		
금융자산		0.4617 (.0642)***		
보험		0.3448 (.1611)**		
사채		-0.3981 (.2586)		
기타 자산		-0.2149 (.1014)		
부채 있음		-0.2778 (.0963)***		
건강: 양호			0.3135 (.0833)***	
나쁨			-0.5449 (.0761)***	
매우 나쁨			-1.0844 (.0995)***	
지척지인 만남 (기준: 없음)				
거의 매일				0.3526 (.1071)***
주당 1~3회				0.5230 (.1036)***
월 1~2회				0.3496 (.1147)***
연 1~6회				0.3206 (.1541)**
거의 만나지 못함				-0.2078 (.2703)
단체 참여(기준: 참여하지 않음)				
종교모임				0.0329 (.0708)
친목모임				0.3140 (.0652)***
여가단체				0.3157 (.1311)**
동창회 등				0.3270 (.0874)***
자원봉사				0.0223 (.1994)
정당 등				-0.0341 (.4080)
-(로그 우도)	1,276.20	1,218.25	1,194.84	1,251.07
모형적합도 검증	222.26***	338.16***	384.98***	272.51***
Pseudo R ²	0.0801	0.1219	0.1387	0.0982
우도비검정 통계량	71.21***	187.11***	233.92***	121.45***

주와 자료: 〈표 5〉의 주와 자료 참조.

우도비검정 통계량은 추가변수군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가설검정 통계량.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보장소득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임금소득, 자영업소득, 부업소득, 기타 소득은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²³⁾

인구학적 특성에 소득 이외의 금전자산을 추가한 추정식 (2)를 보면, 자가 거주와 비교할 때 전세, 월세, 기타 모두 은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미치며,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의 보유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부채 보유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나 사채(빌려준 돈)와 기타 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

인구학적 특성에 건강자산을 추가한 추정식 (3)을 보면, 모든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변수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며, 추정치의 크기를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은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 사회적 자산을 추가한 추정식 (4)를 보면, 지척지인이 없을 때보다는 지척지인이 있을 때, 지척지인을 ‘거의 볼 수 없음’을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은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계수의 추정치는 ‘주당 1~3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또한 단체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친목모임, 여가단체, 동창회 등 모임에 참여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은퇴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종교모임이나 자원봉사, 정당 등 모임은 은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

(3) 은퇴만족도 결정요인: 은퇴사유의 효과

『고령화연구패널』에서 파악한 은퇴사유를²⁴⁾

- ① 수입 충분(‘은퇴를 해도 수입이 충분해서’ 또는 ‘배우자의 수입이 충분해서’)
- ② 일하기 싫어(‘일하기가 싫어져서’)
- ③ 여가/사회봉사(‘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사회봉사/취미활동을 하려고’)
- ④ 본인 건강 악화(‘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 ⑤ 배우자/가족 건강(‘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져서’, ‘다른 가족의 건강이 나빠

23) 사회보장급여로부터의 소득은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은퇴만족도에 대한 이의 부정적 효과는 이러한 지급액이 경제적 여건의 열악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4) 『고령화연구패널』에서는 기타를 제외한 11개의 은퇴사유(‘은퇴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 우선순위에 따라 2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1순위 응답만 이용한다.

저서)

- ⑥ 가사 및 육아(때문에)
- ⑦ 일자리를 못 찾아(‘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 ⑧ 정년퇴직(으로)
- ⑨ 기타

로 재분류하면, <표 7>에서 보듯이 은퇴자 표본 약 세 명 중 한 명은 본인의 건강 악화로, 약 네 명 중 한 명은 정년퇴직으로 은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은퇴사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8~7.6% 정도에 불과하며,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르고 있다.

은퇴사유와 은퇴만족도의 관계를 보면, 자발적 은퇴자(‘수입 충분’, ‘여가/사회봉사’, ‘일하기 싫어’ 은퇴한 자) 중 79~88%, 준비된 또는 수용적 은퇴자(‘정년퇴직’으로 은퇴한 자) 중 73%가 은퇴에 만족하는 반면,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은퇴자(‘본인 건강 악화’, ‘배우자/가족 건강’ 및 ‘일자리를 못 찾아’ 은퇴한 자) 중 39%~50%만이 은퇴에 만족하여 대조를 보인다. 특기할 점은 불가피하지만 (주로 여성에 의한) 선택적 은퇴자(‘가사 및 육아’ 때문에 은퇴한 자) 중 69%가 은퇴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7> 은퇴사유와 은퇴만족도

(단위: 명, %)

	표 본		만 족						불 만 족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전체	2,026	[100.0]	1,144	(56.5)	87	(4.3)	1,057	(52.2)	882	(43.5)
은퇴사유										
수입 충분	75	[3.7]	66	(88.0)	10	(13.3)	56	(74.7)	9	(12.0)
일하기 싫어	110	[5.4]	87	(79.1)	5	(4.5)	82	(74.5)	23	(20.9)
여가/사회봉사	57	[2.8]	49	(86.0)	3	(5.3)	46	(80.7)	8	(14.0)
본인 건강 악화	730	[36.0]	282	(38.6)	13	(1.8)	269	(36.8)	448	(61.4)
배우자/가족건강	119	[5.9]	60	(50.4)	3	(2.5)	57	(47.9)	59	(49.6)
가사 및 육아	107	[5.3]	74	(69.2)	12	(11.2)	62	(57.9)	33	(30.8)
일자리 못 찾아	153	[7.6]	75	(49.0)	1	(0.7)	74	(48.4)	78	(51.0)
정년퇴직	473	[23.3]	344	(72.7)	35	(7.4)	309	(65.3)	129	(27.3)
기타	202	[10.0]	107	(53.0)	5	(2.5)	102	(50.5)	95	(47.0)

주 및 자료: <표 1> 참조.

〈표 8〉은 세 유형의 자산을 포함한 기본모형과 이에 은퇴사유를 추가한 기본모형(수정)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모형을 귀무가설로 하고 9항목으로 구분한 은퇴사유(기준집단: 정년퇴직)를 추가한 기본모형(수정)을 대립가설로 설정한 가설검정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데, 이는 곧 은퇴사유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효과를 가짐을 의미한다.

표에서 보듯이 정년퇴직자와 비교할 때 ‘수입이 충분’한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이 16.9% 높은 반면, ‘본인 건강 악화’(16.2%), ‘배우자/가족 건강 악화’(10.6%), ‘고용조정’(19.9%), ‘기타 사유’(13.8%)로 인한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이 낮으며, 나머지 사유(‘일하기 싫어’, ‘여가/사회봉사’, ‘가사 및 육아’, ‘일자리 못 찾아’)로 인한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기본모형(수정)을 기준으로 추정결과를 설명하자. 먼저 인구학적 특성의 효과를 보면, 은퇴만족도의 성별 차이가 다소 커져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이 9.9% 높으며, 55.1세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은퇴만족도가 하락하다가 그 이후 상승한다. 교육수준이 미치는 효과를 보면, 고졸과 비교할 때 무학 또는 중졸 미만 저학력에서 은퇴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반면, 중졸 이상 교육수준에서는 교육수준이 은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

소득변수가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먼저 가구소득이 1% 늘어나면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은 1.8% 상승한다. 본인의 소득원별 소득 존재의 효과를 보면, 개인연금을 수급할 때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이 18.6% 높아지는 반면 이전소득을 수급하면 오히려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이 10.1% 낮아지며, 나머지 소득원의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반면 자산과 부채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데, 먼저 자가에 거주하는 은퇴자와 비교할 때 전세와 월세로 거주하는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이 각각 12.5%와 22.6% 낮다.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한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은 그렇지 않은 은퇴자와 비교할 때, 각각 10.1%와 11.0% 높은 반면 사채(빌려 준 돈)와 부채의 보유는 은퇴에 만족할 확률을 각각 25.1%와 7.5%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건강자산의 효과를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인 은퇴자와 비교할 때, 건강이 양호한(‘매우 건강’과 ‘건강한 편’)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이 7.5% 높은 반면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거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은퇴자가 은퇴

〈표 8〉 은퇴만족도 결정요인 기본모형

	기본모형 추정치		기본모형 한계효과		기본모형(수정) 추정치		기본모형(수정) 한계효과	
	상수	2.8652	(1.3531)**			3.5842	(1.3951)**	
여성	0.2787	(.0777)***	0.1083	(.0299)***	0.2563	(.0821)***	0.0994	(.0315)***
연령/10	-1.2495	(.4028)***	-0.4890	(.1576)***	-1.3921	(.4124)***	-0.5434	(.1609)***
(연령/10) ²	0.1182	(.0299)***	0.0462	(.0117)***	0.1264	(.0306)***	0.0493	(.0119)***
교육수준(고졸 기준)								
무학	-0.3945	(.1186)***	-0.1560	(.0467)***	-0.2631	(.1216)**	-0.1038	(.0482)**
중졸 미만	-0.2754	(.0954)***	-0.1083	(.0376)***	-0.1784	(.0982)*	-0.0700	(.0387)*
고졸 미만	-0.1619	(.1077)	-0.0639	(.0428)	-0.1085	(.1097)	-0.0426	(.0434)
초대졸	-0.0139	(.1980)	-0.0054	(.0777)	-0.0316	(.2025)	-0.0124	(.0795)
대졸 이상	0.1141	(.1233)	0.0442	(.0472)	0.0811	(.1264)	0.0314	(.0486)
가구소득(로그)	0.0457	(.0150)***	0.0179	(.0059)***	0.0462	(.0153)***	0.0181	(.0060)***
가구소득 무응답	0.2563	(.1248)**	0.0976	(.0458)**	0.2359	(.1271)*	0.0897	(.0467)*
본인 소득원 보유								
임금소득	-0.2180	(.1420)	-0.0864	(.0566)	-0.2161	(.1449)	-0.0855	(.0577)
자영업소득	-0.0449	(.3151)	-0.0176	(.1242)	-0.0214	(.3231)	-0.0084	(.1267)
농어업소득	0.1503	(.2617)	0.0578	(.0985)	0.1461	(.2694)	0.0560	(.1011)
부업소득	-0.1209	(.2835)	-0.0478	(.1127)	-0.1602	(.2864)	-0.0633	(.1141)
국민연금소득	0.1259	(.0841)	0.0488	(.0323)	0.0870	(.0867)	0.0337	(.0334)
개인연금소득	0.4488	(.2652)*	0.1633	(.0866)*	0.5227	(.2716)*	0.1858	(.0838)*
사회보장소득	-0.2519	(.0755)***	-0.0992	(.0298)***	-0.2224	(.0766)***	-0.0873	(.0302)***
기타 소득	-0.1584	(.2574)	-0.0627	(.1026)	-0.2545	(.2643)	-0.1009	(.1053)
거주형태(자가 기준)								
전세	-0.3299	(.0952)***	-0.1307	(.0377)***	-0.3168	(.0964)***	-0.1254	(.0383)***
월세	-0.5824	(.1221)***	-0.2289	(.0462)***	-0.5733	(.1231)***	-0.2255	(.0468)***
기타	-0.0423	(.1432)	-0.0166	(.0564)	-0.0052	(.1449)	-0.0020	(.0566)
유형별 자산 보유								
부동산	0.3054	(.1073)***	0.1156	(.0388)***	0.2678	(.1095)**	0.1015	(.0399)**
금융자산	0.3048	(.0691)***	0.1181	(.0264)***	0.2840	(.0702)***	0.1099	(.0268)***
보험	0.2533	(.1742)	0.0960	(.0633)	0.2233	(.1779)	0.0847	(.0651)
사채	-0.5087	(.2727)*	-0.2005	(.1038)*	-0.6435	(.2867)**	-0.2510	(.1045)**
기타 자산	-0.0361	(1.0378)	-0.0142	(.4087)	-0.1300	(.9755)	-0.0513	(.3880)
부채	-0.2224	(.1006)**	-0.0880	(.0400)**	-0.1903	(.1017)*	-0.0751	(.0404)*

〈표 8〉 계 속

	기본모형 추정치		기본모형 한계효과		기본모형(수정) 추정치		기본모형(수정) 한계효과	
건강상태(보통 기준)								
양호	0.2585	(.0869)***	0.0995	(.0327)***	0.1955	(.0893)**	0.0754	(.0339)**
나쁨	-0.4510	(.0797)***	-0.1773	(.0311)***	-0.3887	(.0822)***	-0.1527	(.0322)***
매우 나쁨	-0.8562	(.1074)***	-0.3296	(.0376)***	-0.7525	(.1114)***	-0.2928	(.0407)***
지척지인(기준: 없음)								
거의 매일 만남	0.1406	(.1166)	0.0547	(.0451)	0.2039	(.1182)*	0.0788	(.0452)*
주당 1~3회	0.2967	(.1129)***	0.1144	(.0427)***	0.3271	(.1147)***	0.1254	(.0429)***
월 1~2회	0.0992	(.1247)	0.0385	(.0480)	0.1156	(.1265)	0.0447	(.0484)
연 1~6회	0.2222	(.1685)	0.0847	(.0621)	0.2505	(.1717)	0.0947	(.0622)
거의 만나지 못함	0.0626	(.2886)	0.0243	(.1114)	0.1297	(.2898)	0.0498	(.1093)
단체모임 참여								
종교모임	0.1469	(.0765)*	0.0570	(.0294)*	0.1146	(.0775)	0.0444	(.0298)
친목모임	0.1230	(.0701)*	0.0481	(.0274)*	0.1050	(.0713)	0.0409	(.0278)
여가활동모임	0.1469	(.1387)	0.0566	(.0525)	0.1384	(.1420)	0.0532	(.0536)
동창회 등	0.2433	(.0932)***	0.0933	(.0348)***	0.2273	(.0946)**	0.0870	(.0353)**
자원봉사	-0.0721	(.2150)	-0.0284	(.0851)	-0.0621	(.2188)	-0.0244	(.0863)
정당 등	0.0438	(.4357)	0.0171	(.1689)	0.2425	(.4442)	0.0915	(.1602)
은퇴사유(정년퇴직 기준)								
수입 충분					0.4672	(.2273)**	0.1690	(.0734)**
일하기 싫어					0.2409	(.1646)	0.0912	(.0600)
여가/사회봉사					0.2892	(.2286)	0.1083	(.0811)
본인 건강 악화					-0.4127	(.1002)***	-0.1616	(.0391)***
배우자/가족 건강					-0.2685	(.1498)*	-0.1064	(.0596)*
가사 및 육아					-0.0513	(.1705)	-0.0201	(.0671)
일자리 못 찾아					-0.5052	(.1297)***	-0.1994	(.0500)***
기타					-0.3475	(.1228)***	-0.1376	(.0486)***
-(로그 우도)	1,105.23				1,078.23			
모형적합도 검증	564.20***				618.20***			
Pseudo R ²	0.2033				0.2228			
우도비검정 통계량					54.00***			

주와 자료: 〈표 5〉와 〈표 6〉의 주와 자료 참조.

〈표 9〉 은퇴 후 경과기간의 효과

	추정치		한계효과	
	은퇴 후 경과기간	0.0283	(.0095)***	0.1105
-(로그 우도)	1,073.79			
우도비검정 통계량	8.88***			

주와 자료: 〈표 5〉와 〈표 6〉의 주와 자료 참조.
기본모형(수정)에 은퇴 후 경과기간을 추가하고, 여타 추정치는 보고를 생략함.

에 만족하는 확률은 각각 15.3%와 29.3% 낮아, 주관적 건강상태가 은퇴만족도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자산이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먼저 지척지인의 존재가 은퇴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거의 매일’ 또는 ‘일 주일에 1~3번’ 정도 만나야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7.8%와 12.5%)를 가지며, 만남의 빈도가 이보다 적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단체 모임 중에서는 ‘동창회 등 모임’만이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8.7% 높이는 반면, 나머지 모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간헐적인 단체모임보다는 종종 쉽게 만날 수 있는 지척지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산이 은퇴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추측할 수 있다.

〈표 9〉는 기본모형(수정)에 은퇴 후 경과기간을 추가할 때 이의 효과를 보여 준다. 표에서 보듯이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며, 이의 한계 효과를 보면 은퇴 후 1년마다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이 1.1%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²⁵⁾

3. 가설검정: 은퇴 직전 일자리의 효과

이제 은퇴 직전 일자리에 해당하는 ‘가장 최근 일자리’의 특성이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²⁶⁾ 〈표 10〉은 은퇴 직전 일자리의 특성과 은퇴만족

25) 이러한 결과는 일부 국외문헌에서 나타나는 은퇴 적응과정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적해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26) 『고령화연구패널』은 근로경험이 있는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한 ‘가장 최근 일자리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은퇴자에게는 이 일자리가 ‘은퇴 직전 마지막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의 특성이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과약하고자 한다. 다만 이 둘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은퇴자가 은퇴 후 짧은 기간 동안 소일거리를 가졌을 경우에 해당

〈표 10〉 은퇴 직전 일자리와 은퇴만족도

(단위: 명, %)

전체	표본		만족		불만족	
	2,026	[100.0]	1,144	(56.5)	882	(43.5)
종사상 지위						
상용직	969	[47.8]	617	(63.7)	352	(36.3)
임시일용직	353	[17.4]	144	(40.8)	209	(59.2)
고용주	173	[8.5]	104	(60.1)	69	(39.9)
자영자	530	[26.2]	278	(52.5)	252	(47.5)
무응답	1	[0.0]	1		0	
사업체 규모						
피용자 없음	312	[15.4]	185	(59.3)	165	(52.9)
1~4인	512	[25.3]	263	(51.4)	249	(48.6)
5~9인	150	[7.4]	73	(48.7)	77	(51.3)
10~49인	449	[22.2]	247	(55.0)	202	(45.0)
50~99인	141	[7.0]	93	(66.0)	48	(34.0)
100~299인	138	[6.8]	88	(63.8)	50	(36.2)
300인 이상	286	[14.1]	173	(60.5)	75	(26.2)
무응답	38	[1.9]	22	(57.9)	16	(42.1)
전일제근로	1,863	[92.0]	1,061	(57.0)	802	(43.0)
파트타임근로	163	[8.0]	83	(50.9)	80	(49.1)
이직사유						
자발적	906	[44.7]	636	(70.2)	270	(29.8)
비자발적	1,120	[55.3]	508	(45.4)	612	(54.6)
파산·도산, 계약종료	99	[4.9]	45	(45.5)	54	(54.5)
근로조건 안 좋아	24	[1.2]	12	(50.0)	12	(50.0)
일자리 문제	66	[3.3]	24	(36.4)	42	(63.6)
육아 가사 간병	48	[2.4]	19	(39.6)	29	(60.4)
건강 악화	404	[19.9]	102	(25.2)	302	(74.8)
나이 많아	79	[3.9]	33	(41.8)	46	(58.2)
고용조정	48	[2.4]	30	(62.5)	18	(37.5)
정년퇴직	293	[14.5]	210	(71.7)	83	(28.3)
기타 ¹⁾	59	[2.9]	33	(55.9)	26	(44.1)
	표본	평균<sd>	표본	평균<sd>	표본	평균<sd>
근속기간 (월) ²⁾	1,934	217<168>	1,103	232<168>	831	198<166>
근속기간 무응답	92		41		51	
근로시간(시간/주) ²⁾	2,013	52.6<20.4>	1,139	54.4<20.7>	874	51.2<20.0>
근로시간 무응답	13		5		8	
임금 (만원/월)**	1,837	137.9<161.8>	1,034	155.8<170.1>	804	114.9<147.3>
임금 무응답	189		111		78	

주: 1) 이직사유의 자발성, 비자발성에 무응답한 표본 1명과 비자발적 이직 사유 중 구체적인 사유에 무응답한 2명을 포함.

2) 평균 및 표준편차(sd)는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표본으로부터 계산함.

3) [] 안은 전체 표본 중 차지하는 비중이고, () 안은 표본특성별 만족 또는 불만족의 비중임.

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은퇴 직전 일자리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한 은퇴자가 임시일용직으로 근로한 은퇴자보다 은퇴에 만족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고(64% 대비 41%), 고용주 중 60%가 은퇴에 만족하는 반면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중 53%만이 은퇴에 만족하고 있다.

은퇴 직전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별 은퇴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은퇴에 만족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거나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300인 이상 대기업 은퇴자(표본 중 12%) 중 70%가 은퇴에 만족하는 반면 1~4인과 5~9인 영세사업체 은퇴자는 각각 51%와 49%만이 은퇴에 만족하고 있다. 또한 전일제근로(57%)와 비교할 때, 파트타임근로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하는 비중이 51%로 다소 낮다.

은퇴에 불만족하는 은퇴자와 비교할 때, 은퇴에 만족하는 은퇴자의 은퇴 직전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232개월 대 198개월)이 길고, 주당 근로시간(54.2시간 대 51.2시간)도 길고, 월평균 임금(156만 원 대 115만 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화연구패널』은 은퇴 직전 일자리에서의 이직사유를 두 가지 방식으로 묻고 있다. 첫째는 이직의 자발성 여부를 직접 묻는 설문

‘가장 최근에 하셨던 일자리는 어떻게 그만두셨습니까?’

- [1] 원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다.
- [2] 원해서 스스로 그만두었다.

이며, 둘째는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 이직사유를 파악하는 설문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파산, 도산 등으로 [2] 계약이 끝나서
- [3]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4]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 [5]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6] 장사,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 [7]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8]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 [9] 육아, 가사, 간병 등 가사 [10] 건강이 좋지 않아서
- [11] 나이가 많아서 [12]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 [13] 정리해고 [14] 권고사직 [15] 명예퇴직 [16] 정년퇴직 [17] 기타

이다.

이를 재분류하여 은퇴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에서 보듯이 자발적 이직자 중 은퇴에 만족하는 비중은 70%로 비자발적 이직자의 45%보다 월등히

한다. 여기에서는 ‘가장 최근 일자리’를 ‘은퇴 직전 일자리’로 간주한다.

높아 은퇴 직전 일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은퇴자의 은퇴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자발적 이직을 사유별로 보면, 정년퇴직자의 72%가 은퇴에 만족하여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예상과 달리 은퇴 직전 일자리에서 고용조정(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을 겪은 은퇴자 중 63%가 은퇴에 만족하고 있다. 반면 건강 악화나 일자리 문제(‘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장사,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를 이유로 이직한 은퇴자의 은퇴만족도는 매우 낮다. 여타 비자발적 이직의 구체적 사유들 역시 전반적으로 은퇴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1〉은 인구학적 특성, 소득, 금전자산, 건강자산, 사회적 자산, 그리고 은퇴사유가 설명변수로 포함된 은퇴만족도 결정요인 기본모형(수정)에 최근 일자리(은퇴 직전 일자리)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군을 추가한 후, 이들 각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한 이직사유의 추가효과

〈표 11〉 가설검정 결과: 은퇴 직전 일자의 효과

구분	추가변수	- (로그 우도)	검정통계량
기본모형(수정)		1,078.23	
이직사유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기준)	1,049.42	57.62***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파산 도산 계약 종료, 근로조건 안 좋아, 일자리 문제, 육아 가사 간병, 건강 악화, 나이 많아, 고용조정, 정년퇴직(기준), 기타	1,042.60	13.64**
근속기간	근속기간(로그), 근속기간 무응답	1,074.83	6.81**
종사상 지위	상용직(기준),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1,078.17	0.12
사업체 규모	6개 사업체 규모와 사업체 규모 무응답	1,075.74	4.98
파트타임	전일제(기준), 파트타임근로	1,078.20	0.05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이의 제공	1,077.01	2.44
	근로시간(로그)	1,077.86	0.73
임금	임금수준(로그)와 임금수준 무응답	1,078.22	0.02

주: ***, **, *는 검정통계량이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추가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귀무가설(기본모형(수정))을 기각함을 의미한다.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좀더 세분할 때에도 이의 추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은퇴 직전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 역시 추가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반면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파트타임 여부, 근로시간, 임금수준의 추가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12〉는 은퇴 직전 일자리 특성 중 가설검정을 통과한 설명변수들을 추가한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은퇴사유를 포함한 다른 특성들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은퇴 직전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한 은퇴자와 비교하면 자발적으

〈표 12〉 은퇴 직전 일자리의 효과

	추정치		한계효과	
상수	3.0406	(1.4369)**		
은퇴직전 일자리				
자발적 이직	0.3229	(.1360)**	0.1250	(.0519)**
비자발적 이직(기준: 정년퇴직)				
파산·도산, 계약종료	-0.1442	(.1893)	-0.0569	(.0752)
근로조건 안 좋아	-0.2193	(.3031)	-0.0868	(.1209)
일자리 문제	-0.2801	(.2200)	-0.1110	(.0876)
육아, 가사, 간병	-0.4286	(.2542)*	-0.1697	(.0993)*
건강 악화	-0.2739	(.1598)*	-0.1080	(.0633)*
나이 많아	-0.4738	(.1852)**	-0.1873	(.0718)**
고용조정	0.0517	(.2264)	0.0200	(.0873)
기타	0.1070	(.2291)	0.0412	(.0870)
근속기간(로그, 월)				
근속기간 무응답	0.0571	(.2132)	0.0222	(.0821)
- (로그 우도)	1,038.53			
모형적합도 검증	695.59***			
Pseudo R ²	0.2514			
우도비검정 통계량	79.40***			

주: 표본수는 2,026.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나머지 변수들에 대한 추정치는 생략한다. 모형적합도 검증은 귀무가설(상수를 제외한 모든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 대한 우도비 가설검정 통계량, 우도비검정 통계량은 추가변수군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가설검정 통계량임.

로 이직한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할 확률이 12.5% 높게 나타난다. 비자발적 이직을 세부 사유별로 보면, 은퇴 직전 일자리에서 나이 때문에 이직한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할 확률은 18.7%나 낮으며, 육아, 가사, 간병으로 또는 건강 악화에 따라 이직한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할 확률 역시 각각 17.0% 또는 10.8%나 낮다. 은퇴 직전 일자리에서의 장기근속은 은퇴만족도를 높이는데, 근속기간이 1개월 늘어날 때 은퇴에 만족할 확률은 2.6%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은퇴 직전 일자리는 그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과 그 자리에서 이직한 사유, 즉 이직의 자발성 여부와 비자발적 이직의 일부 세부 사유만이 은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의 효과를 미치며, 그 밖의 다른 특성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에 포함된 2,026명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만족도를 살펴본 후 이의 결정요인을 모색하고 있다.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먼저 기존연구들에서 이미 언급된 성, 연령, 교육수준을 포함하는 인구학적 특성과 세 가지 유형의 자산, 즉 금전자산, 건강자산, 사회적 자산을 고려한다. 은퇴 후 경제여건을 나타내는 금전자산에는 가구총소득, 다양한 소득원별 본인의 소득 유무, 거주주택의 소유형태 및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포함된다. 사회적 자산에는 지척지인(가까이 사는 친구, 친척, 이웃사촌 등)의 존재와 이들과 만남의 빈도 및 각종 단체모임에의 참여 여부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에 추가하여 은퇴사유와 은퇴 후 경과기간 및 은퇴 직전 일자리의 특성이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추가효과의 유의성에 대한 가설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하는 금전자산, 건강자산, 그리고 사회적 자산이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먼저 금전자산이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은퇴자의 가구 총소득이 1% 상승하면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은 1.8% 정도 상승하며, 본인의 소득원별로는 개인연금소득이 긍정적 효과를, 사회보장소득이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반면, 국민연금소득 등 나머지 소득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

거주주택의 효과를 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은퇴자와 비교할 때,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은 각각 12.5%, 22.6%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은퇴 후 주택보유가 은퇴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유형별 효과를 보면,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보유는 은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사채(빌려준 돈)나 부채의 보유는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

다음으로 건강자산이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인 은퇴자와 비교할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이 7.5% 정도 높은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불량한(나쁜 편 또는 매우 나쁜)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은 각각 15.3%와 29.3% 낮아 건강상태가 은퇴자의 은퇴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자산 중 지척지인의 존재는 은퇴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갖지만, 지척지인과의 만남 빈도가 주당 1~3회 이상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반면 그보다 적은 빈도의 만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단체모임 참여가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대부분 모임이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는 하나 동창회등 모임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을 높이고(8.7%), 나머지 단체모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이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이 10% 정도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만족도가 높다. 조사 당시 연령과 은퇴만족도는 이차식의 관계를 보이는데, 약 55세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이 하락하다가 그 이후에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일정 연령 이전에는 은퇴, 특히 비자발적이거나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은퇴 자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과 그 이후 점차 은퇴에 적응해 가는 과정,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와 함께 경제적 여건의 안정화와 이에 따른 적극적 여가의 활용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은퇴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은퇴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은퇴사유가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추가효과 역시 주목할 만하다. 예정된 은퇴인 정년퇴직과 비교할 때 ‘수입이 충분하여’ 은퇴한 자발적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이 16.9% 높으며, 비자발적 은퇴 중 ‘본인 건강 악화’ 또는

‘배우자나 가족의 건강’문제로 인한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은 16.2% 또는 10.6% 낮고, ‘일자리를 못 찾아’ 은퇴한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은 19.9% 낮아 은퇴사유가 은퇴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자발적 은퇴인 ‘일하기 싫어’나 ‘여가/사회봉사’의 은퇴사유는 은퇴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효과를, 비자발적 은퇴인 ‘가사 및 육아’는 이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넷째, 은퇴 직전 일자리가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추가효과를 보면, 그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과 이직사유의 자발성 및 비자발적 이직의 일부 세부 사유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효과를 미치는 반면,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파트타임근로 여부, 근로시간이나 임금수준 등 그 외 특성들은 은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속하는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할 때 자발적 이직은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을 12.5% 높이는 반면, ‘나이 많아’, ‘건강 악화’로, 또는 ‘육아, 가사, 간병’으로 이직하면 은퇴에 만족하는 확률이 11~19% 낮아진다. 또한 은퇴 직전 일자리에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은퇴 후 은퇴만족도는 높아지는데, 이는 장기경력 일자리에서 은퇴하여 단기의 일자리를 다시 얻지 않고 은퇴 후 생활을 영위하여 은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정책함의를 찾는다면, 첫째 은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한 은퇴 후 소득흐름(post-retirement income stream)을 보장하는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은퇴자의 소득원 중 개인연금소득과 거주주택의 소유가 은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은퇴 이전에 국민연금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연금에 가입하도록 유인하거나 거주주택을 포함한 근로자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은퇴 후 뿐 아니라 근로자 재직시 주기적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강 악화로 인한 준비되지 않고 갑작스런 이직 및 은퇴를 예방하는 한편, 은퇴 후 건강자산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은퇴자를 포함한 고령자들의 사회적 배제를 막고 이들의 사회적 자산을 늘리는 은퇴공동체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와 이들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영위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적 기초생활보조보다는 추가의 재정부담 없이 이들이 일정 공

간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산적 활동과 상호 잦은 만남을 통하여 은퇴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사회적 자산을 형성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건실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가사, 육아 및 간병 등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여, 특히 여성의 이직과 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조기은퇴를 막음으로써 은퇴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전반적 고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고령사회의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또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년연장 방안의 모색에 있어 청년층 실업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²⁷⁾

참 고 문 헌

- 방하남·산동균·김동현·신현구,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2005.
- 백은영, “은퇴자의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노인복지연구』 제44권(여름호), 2009, 345~372.
- 손종철, “중고령자 은퇴 및 은퇴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125~153.
- 신현구,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노동리뷰』, 2007, 81~93.
- 안주엽,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제1차년도), 2006.
- Ando, A. and F. Modigliani,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 27) 안주엽(2010)은 청년층과 중고령층 노동력의 고용대체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OECD의 2005년 신고용전략(re-assessment of jobs strategy)의 배경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엄격한 ‘인력정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경제 전체적으로 청년층과 중고령층 노동력 간에는 직종분리 또는 세대 간 분업이 강하게 나타나는 바 이들 노동력 간에 고용대체보다는 고용보완 관계가 존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경제 전체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고령촉진 방안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1963, 55~84.
- Andrews, Emily S., “Gaps in Retirement Income Adequacy,” in *The Future of Pensions in the United States*, ed., by Richard Schmitt, Philadelphia: Pension Research Council and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3, 1~13.
- Bender, Keith A., *The Well-Being of Retirees: Evidence Using Subjective Data*, Working Paper No. 2004-24, Chestnut Hill, MA: Boston College, 2004.
- Benjamin, Daniel J., Ori Heffetz, Miles S. Kimball, and Rees-Jones Alex, “Do People Seek to Maximize Happiness? Evidence from New Survey,” *NBER Working Paper* 16489, 2010.
- Blanchflower, David and Andrew J. Oswald, “Well-being Over Time in British and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2004, 1359~1386.
- Charles, Kerwin K., “Is Retirement Depressing? Labor Force Ina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Later Life,” *NBER Working Paper* 9033, 2002.
- Clark, Andrew E. and Andrew J. Oswald, “Satisfaction and Comparison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1, 1996, 359~381.
- Clark, Andrew E., Paul Frijters, and Michael A. Shields,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 2008, 95~144.
- Di Tella, Rafael, Robert J. MacCulloch, and Andrew J. Oswald, “Preferences Over Inflation and Unemployment: Evidence from Surveys of Happines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1(1), 2001, 335~341.
- _____,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 2003, 809~827.
- Dolan, Paul, Tessa Peasgood and Mathew White,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 2008, 94~122.
- Dorfman, Lorrain T., “Retirement Preparation and Retirement Satisfaction in the Rural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8(4), 1989, 432~450.
- Easterlin, Richard A., “Income and Happiness: Toward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111, 2001, 465~484.
- Elder, Harold W. and Patricia M. Rudolph, “Does Retirement Planning Affect the

- Level of Retirement Satisfaction?," *Financial Services Review* 8, 1999, 117~127.
- Ferrer-i-Carbonell, Ada and Paul Frijters, "How Important is Methodology for the Estimates of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The Economic Journal* 114, 2004, 641~659.
- Fouquereau, Evelyne, Anne Fernandez, Antonio M. Fonseca, Maria C. Paul, and Virpi Uotinen, "Perceptions of and Satisfaction with Retirement: A Comparison of Six European Union Countries," *Psychology and Aging* 20(3), 2005, 524~528.
- Frey, Bruno, S. and Alois Stutzer,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2002, 402~435.
- Gustman, A. and T. Steinmeier, "The Social Security Early Retirement Age in a Structural Model of Retirement and Weal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 2005, 441~463.
- Hurd, M., "Research on the Elderly, Economic Status, Retirement and Consumption and Sav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8(2), 1990, 565~637.
- Krueger, Alan, B. and David A. Schkade, "The Reliability of Subjective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 2008, 1833~1845.
- Noone, Jack H., Christine Stephens, and Fiona M. Alpass, "Preretirement Planning and Well-being in Later Life: A Prospective Study," *Research on Aging* 31 (3), 2009, 295~317.
- OECD, *2009 Employment Outlook*, 2009.
- Panis, Constantijn W. A., "Annuities and Retirement Well-Being," in Olivia S. Mitchell and Stephen P. Utkus, eds., *Pension Design and Structure: New Lessons from Behavioral Fi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259~275.
- Pinquart, Martin and Ines Schindler, "Change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A Latent-class Approach," *Psychology and Aging* 22(3), 2007, 442~455.
- Quinn, J., "Microeconomic Determinants of Early Retirement: Cross-sectional View of White Married M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5), 1977, 329~346.
- Schmitt, Neal, J., Kenneth White, Bryan W. Coyle, and John Rauschenberger,

- “Retirement and Life Satisfaction,” *Academy of Managerial Journal* 22(2), 1979, 282~291.
- Shultz, Kenneth S., Kelly R. Morton, and Joelle R. Weckerle, “The Influence of Push and Pull Factors on Voluntary and Involuntary Early Retirees’ Retirement Decision and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3, 1998, 45~57.
- Smith, Deborah B. and Phyllis Moen, “Retirement Satisfaction for Retiree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Family Issues* 25(2), 2004, 262~285.
- Szinovacz, Maximiliane E. and Adam Davey, “Predictors of Perceptions of Involuntary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45(1), 2005, 36~47.
- Von Solinge, Hanna and Kene Henkens, “Involuntary Retirement: The Role of Restrictive Circumstances, Timing, and Social Embeddednes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62B(5), 2007, S295~S303.
- Welsch, Heinz, “Macroeconomics and Life Satisfaction: Revisiting the “Misery Index,”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10(12), 2007, 237~251.

[Abstract]

A Study of Retirees' Satisfaction on Retirement*

Jaimie Sung** · Joyup Ahn***

There are so many elderlies who experienced forced retirement due to mandatory early retirement practice in the labor market amid of expansion of life expectancy and compact population ageing, which has resulted in higher proportion of the elder. Involuntary and unexpected retirement far earlier than the age for pension entitlement means that those who retired without preparing for sufficient post-retirement income would face higher probabilities of being in poverty and therefore their satisfaction on the post-retirement lives would be lower.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elderlies' or retirees' satisfaction on life but very few on satisfaction on retirement. This study, using data from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retirement satisfaction by estimating the probit model and test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an additional set of prospective explanatory variables according to the likelihood-ratio test procedure. The empirical analysis applied to 2,026 retirees aged 45 or more reveals that, as similar to the previous studies, health asset(or health capital), which is defined by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ocial network assets, which is consisted of existence of and frequency of meeting friends or relatives nearby and participation into various social groups, as well as pecuniary assets, which is consisted of the total family income, ownership of residence, existence of the retiree's income from various sources, and existence of various physical assets and deb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retirement satisfaction. In addition, compared with the expected mandatory retirement at the age, voluntary retire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tirement satisfaction while involuntary and unexpected retirement has a negative effect. The hypothesis test on the additional effects of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last job before retirement shows that only tenure at the last job, voluntary separation from it, and the detailed reasons for separa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o improve retirement satisfaction and further satisfaction of lives of the elder, it is necessary to build up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that workers have enough time to arrange sufficient post-retirement income before expected and prepared retirement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setup for health care and social solidarity after retirement.

Keywords: retirement, retirement satisfaction, health capital, social network assets, reasons for retirement

JEL Classification: J1, D1, C2

* This paper owes to the support from the Education-Research Promotion Fund from the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Industrial Management a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Tel: 82-41-560-1442, Email: jsung13@kut.ac.kr

*** Corresponding Author,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Tel: 82-2-3775-5555, E-mail: jyahn@kli.re.kr